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금융감독원

보도시점 2026.11.4(수) 배포 2026.11.4.(수) 금융위 회의 후

홍콩 H지수 ELS 관련 은행·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

- 제19차 금융위원회(11.4.) 의결 -

1. 조치 개요

금융위원회(이하 “금융위”)는 ’26년 11월 4일 개최된 **제19차 정례회의**에서 **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**, 「**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**(이하 “금소법”) 」을 **위반**한 **7개 은행**(국민, 신한, 하나, 농협, SC, 우리, 수협은행)에 대하여 **3,619.60억원의 과징금 및 17.78억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**를 **최종 의결**하였다.

※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 등으로 설명의무 위반, 일부 정보 미고려 등 적합성 원칙 위반 등

또한, 금융위는 **6개 증권사**(미래, KB, 신한, NH, 한투, 삼성증권)에 대해 **92.82억원의 과징금 및 16.12억원**의 **과태료 부과 조치**도 **최종 의결**하였다.

※ 위험등급의 유의사항 누락 등으로 설명의무 위반 등

2. 의결 취지 및 향후 계획

금융위는 금번 제재안이 다수의 금융소비자와 관련되며 주요 금융기관이 대상이 된 **금소법 위반 첫 사례**이므로 **철저한 법리검토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**을 바탕으로 **법과 원칙**에 따라 **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치**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심의를 진행하였다.

금번에 부과 결정한 **약 37백억원의 과징금·과태료**는 금융위가 부과한 **최대 규모**의 **금전 제재**에 해당하며, 금융위는 동 결정으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**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책임**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.

향후에도 금융위는 **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**에 대해서 금소법령에 따라 **신속·엄정하게 제재**하고 과징금 부과를 통한 **부당이득의 환수**도 **적극 추진**해 나갈 예정이다.

또한, 현행 **금융소비자보호 법제·제도**에도 불구하고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**제도적 보완 노력**도 **병행**해 나갈 것이다. 우선, 투자성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**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**을 마련하여 '27년 1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. 또한,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**최선의 이익에 부합**하는 방향으로 금융업을 영위토록 하는 **금융소비자보호원칙 마련*** 등을 골자로 하는 금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만큼, **금소법이 조속하게 개정**되도록 국회의 법안심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.

*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동 원칙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→ 원칙 준수시 제재 감경 근거로 활용

담당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문희	(02-2100-2630)
		담당자	사무관	윤송이	(02-2100-2524)
			사무관	박예슬	(02-2100-2642)
<공동>	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	책임자	국 장	김남태	(02-3145-7050)
		담당자	부국장	임연하	(02-3145-7060)
	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	책임자	국 장	이지원	(02-3145-7200)
		담당자	팀 장	김정훈	(02-3145-7205)
	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	책임자	국 장	김형순	(02-3145-7010)
		담당자	팀 장	황준웅	(02-3145-7036)
	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	책임자	국 장	최상두	(02-3145-7690)
		담당자	팀 장	오창화	(02-3145-7631)
	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	책임자	국 장	오세천	(02-3145-7830)
		담당자	팀 장	조영석	(02-3145-7832)
	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	책임자	선임국장	노영후	(02-3145-5700)
		담당자	팀 장	김세훈	(02-3145-569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7개 은행 주요 위반사항

7개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**합리적인 판단**에 **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**(중요한 사항)으로서 H지수를 포함한 ELS가 편입되어 있는 주가연계신탁(이하 'H지수 ELT')의 **투자에 따르는 위험**을 **설명**하는 **수익률 모의실험 결과**가 **누락**되었거나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의 **분석 대상 기간**을 변경(예 : 10년)한 **운용자산설명서**를 사용함으로써 설명 대상인 **중요한 사항**을 **누락**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또한 일부 은행은 H지수 ELT 설명서에 '기초자산의 변동에 의해 손익구조가 결정'된다는 내용 등으로 **손익구조**를 **과도하게 단순화**하여 **설명**하는 데 그치는 등, H지수 ELT의 **손실가능성**을 **결정**하는 중요한 투자위험인 **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 등에 따른 위험**에 대한 설명을 **누락**하였다.

일부 은행은 H지수 ELT 등 판매과정에서 일반금융소비자의 **'재산상황'** 정보를 **고려하지 않은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**를 기초로 H지수 관련 상품 투자에 **적합한지 여부를 판단**하고 **투자 권유 및 판매**하였다.

이에 **금융위**는 본 건에서 확인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(백테스트) 누락,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위험 누락 등에 따른 **금소법상 설명의무 위반** 및 투자자성향 평가시 일부 정보 미고려에 따른 **적합성원칙 위반** 등에 대해 **7개 은행**에 대해서 과징금 **3,619.60억원 및 과태료 17.78억원**의 조치를 의결하였다.

<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·과태료 부과액>

* 억원

구분	국민은행	신한은행	하나은행	농협은행	SC은행	우리은행	수협은행	합계
과징금	1,723.34	387.45	924.75	401.75	179.00	3.31	-	3,619.60
과태료	13.00	-	-	4.20	0.16	-	0.42	17.78

※ 증권사의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위반, 위험등급의 유의사항 누락 등 설명의무 위반, 부당권유금지 위반에 따른 과징금·과태료 부과액은 아래와 같음

* 억원

구분	미래에셋증권	KB증권	신한투자증권	NH투자증권	한국투자증권	삼성증권	합계
과징금	0.04	-	0.10	0.23	92.45	-	92.82
과태료	3.00	3.00	-	-	0.12	10.00	16.12